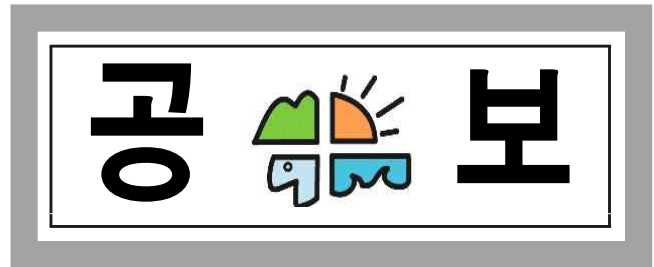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832호 2014년 2월 3일(월)

규 칙

○ 속초시 교통발전협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..... 2

공 고

○ 건축허가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..... 5

회 람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속초시 교통발전협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4년 2월 3일

속 초 시 장 채 용 생 인

속초시 규칙 제1305호

속초시 교통발전협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

속초시 교통발전협의회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속초시의 교통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중교통 지원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관련 사업 등 교통발전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통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중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제8호(종전 제6호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
7.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교통 관련 주요 현안사항

제3조 제1항 중 “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”를 “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”로 하고, 같은조 제3항 중 “기획감사실장, 교통행정과장, 속초경찰서 경비교통과장”을 “기획감사실장, 주민생활지원실장, 여성가족과장, 교통행정과장, 건설과장, 속초경찰서 경비교통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항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

과 같이 한다.

2. 운수업체 대표(협회·조합 포함) 및 종사자 대표

3. 교통관련 및 소비자보호·여성단체 등의 공익 관련 단체 대표와 장애인·노인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(협회 포함) 대표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<u>이 규칙은 속초시의 교통대책 및 환경 개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, 주요 교통발전 시책과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통발전협회의 조직·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	제1조(목적) <u>이 규칙은 속초시의 교통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중교통 지원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관련 사업 등 교통발전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통발전협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
제2조(기능) 속초시 교통발전협회(“이하 협의회”라 한다.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1~5. <생략> <u>6. 기타 교통관련 주요 현안 사항</u> <u>6~7. <신설></u>	제2조(기능) 속초시 교통발전협회(“이하 협의회”라 한다.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1~5. <현행과 같음> <u>6. <8호로 변경></u> <u>6.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</u> <u>7.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</u> <u>8. 그 밖에 교통 관련 주요 현안사항</u>
제3조(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<u>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</u>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<생략>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당연직 위원은 <u>기획감사실장, 교통행정과장, 속초경찰서 경비교통과장</u> 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. 1. <생략> <u>2. 운수업체(협회·조합 포함) 및 종사자 대표</u> <u>3. 교통, 소비자 보호, 여성 등 공익 관련 단체 대표</u>	제3조(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<u>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</u>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<현행과 같음>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당연직 위원은 <u>기획감사실장, 주민생활지원실장, 여성가족과장, 교통행정과장, 건설과장, 속초경찰서 경비교통과장</u> 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. 1. <현행과 같음> <u>2. 운수업체 대표(협회·조합 포함) 및 종사자 대표</u> <u>3. 교통관련 및 소비자보호·여성단체 등의 공익 관련 단체 대표와 장애인·노인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(협회 포함) 대표</u>

건축허가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

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·공고 합니다.

2014년 2월 3일

속 초 시 장

가. 공 고 명 :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지정

나. 도로위치 :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1569-24외 2필지

다. 공고기간 : 2014. 2. 3. ~ 2. 28. (25일간)

라. 도로지정 조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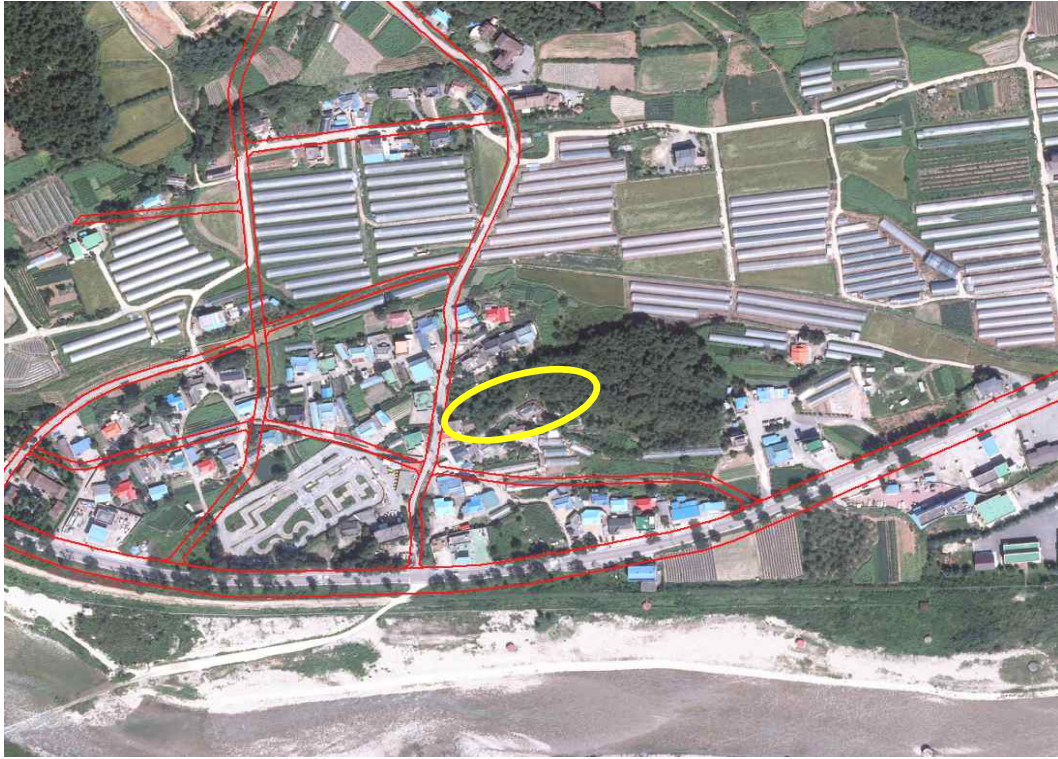
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m ²)		소유자	건축허가번호 (건축허가일)	비고
			공부 면적	지정 면적			
계	3필지			2,052			
강원도 속초시 도문동	1569-24	임	4,449	1,172	김동호	2014-건축허가 -제1호 (2014. 01. 28.)	건축주 :김동호
	1569-21	임	3,889	538			
	1692-1	임	2,770	342			

마. 공고방법 :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

바. 관계도서 : 속초시 도시디자인과 비치(열람가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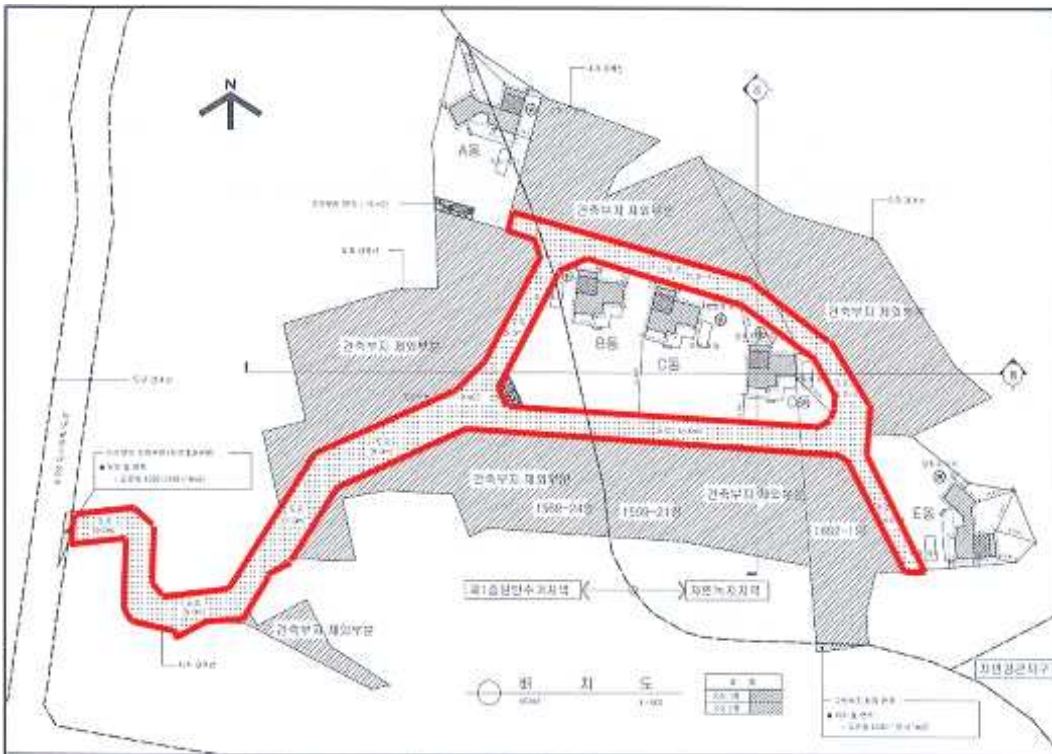
위치도 및 현황도

-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.



위 치 도

축 척 NONE



현 황 도

축 척 NONE